성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8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주민등록표(등·초본) 교부시 민원 업무용 수입증지를 전자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신설(안 제4조의4)
- 주민등록표(등·초본)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수입증지를 날인하여 발급

○ “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” 을 “요금계기의 사용”으로 변경(안 제4조의2)

○ “도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”를 “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”로 변경(안 제4조의2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(1) 관련법령 :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2(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),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2(관인인영의 색깔) 및 제57조의2(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)

(2) 도 공문 :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 날인 실시계획 통보 (자치행정과-25176호, 2010.12.09)

(3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(4) 입법예고(2011. 06. 09. ~ 2011. 06. 30.) 결과 : 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)”을 “(요금계기의 사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요금계기(이하 계기”라 한다) 및 무인민원발급기”를 “요금계기(이하 계기”라 한다)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“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”를 각각 “계기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도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”를 “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4(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)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.

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개시일,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)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”라 한다)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4조의2(요금계기의 사용) ①----------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”라 한다)에----------.
②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.	②계기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	③---------- 계기----------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----------.
④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.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4(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)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②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.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개시일,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